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재란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028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최재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
박칠성, 봉양순, 송경택,
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인,
, 유정희, 윤종복, 이병도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
허·훈, 홍국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'전 월세종합지원센터'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·금융지원, 전세가격 상담,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
- 그러나 전 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,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어 해당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전 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제1항)
- 나. 전 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규정함(안 제2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25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

제25조(전·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
2.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·임대차상담 지원
3.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·주거지원 안내
4.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
5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
6.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| <p><u>제5장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</u></p> <p><u>제25조(전·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운영</u> <u>2.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·임대차상담 지원</u> <u>3.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·주거지원 안내</u> <u>4.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</u> <u>5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</u> <u>6.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</u> |